

[일련번호 : 3]

양 천 구

주 의 요 구

제 목 유연근무 관련 복무실태 점검 미실시

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과

내 용

1. 업무개요

□□과는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소속직원의 인사 제도 운영 및 복무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의2(근무기강의 확립)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근무시간, 출퇴근, 유연근무, 당직, 휴가, 출장 등 복무 실태 점검을 하여야 하고,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연근무제의 실시로 인해 공무원 복무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유연근무제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유연근무제 사용자 복무관리 협조 요청’(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4473, 2021.9.24.)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의 유연근무에 대한 복무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유연근무를 사용하는 날에는 반드시 출·퇴근시간 등록(얼굴인식)을 해야함을 교육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의2 제2항에 따

른 복무실태 점검 시 ‘유연근무자 출·퇴근 등록 현황’도 함께 점검하도록 하였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과는 감사대상기간 유연근무제 사용자에 대한 복무실태 점검을 시행하지 않아 유연근무자 복무 관리에 소홀하였다.

4.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

□□과는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5. 조치할 사항

□□과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유연근무자에 대한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고, 동일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계획 수립 및 직원교육 등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주의)